

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17년 3월 31일(금) 오전 9시
2. 장 소 : 서울 강북구 4.19로 74 강의실(수유동, 강북청소년수련관)
3. 회의 목적 사항
 - 가. 보고사항 :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
 - 나. 부의안건
 - 제1호 의안 : 제6기(2016.01.01.~2016.12.31.) 재무제표(연결포함) 승인의 건
 - 제2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[별첨 #1]
 - 제3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
 - 제4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
 - 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[별첨 #2]
 - 제6호 의안 :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[별첨 #3]
 - 제7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[별첨 #4]
 - 제8호 의안 : 임원 퇴직금규정 변경의 건[별첨 #5]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⑤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으로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5. 경영참고사항
상법 제542조의4의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였고,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: 소집통지서, 신분증
- 대리행사: 소집통지서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, 인감증명서 첨부), 대리인의 신분증

(법인주주: 위임장, 법인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대리인신분증)

7. 안내사항

주주총회 행사장의 주차 공간 이용이 불가하오니,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3월 16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9길 6, 3-4층(삼성동, 제이에스타워)

주식회사 파티게임즈

대표이사 김 용 훈

직인
생략

[별첨 #1]

○ 정관 변경 안

| 구 분 | 현 행 | 개정(안) | 비 고 |
|--|---|---|-----------------|
| 제10조 (주식의 발행 및 배정) 제1항 변경 | ①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. 1.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.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| ①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. 1.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.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| 투자 유연성 확립 |
| 제10조의 2 (주식매수 선택권) | ①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...(이하 생략) | ①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...(이하 생략) | 상법에 맞게 한도 수정 |
| 제14조의 2 (전환사채 의 발행 및 배정) |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1.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|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1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| 투자 유연성 확립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...(이하 생략) |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...(이하 생략) | |
| 제15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) |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1.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...(이하 생략) |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1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...(이하 생략) | 투자 유연성 확립 |
| 제28조 (이사의 수) |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. ...(이하 생략) |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 로 한다. ...(이하 생략) |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정원 변경 |
| 제32조 (대표이사 등의 선임) |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1명, 부사장,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. |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. | 대표이사 외 임원 선임은 정관상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 |
| 제33조 (이사의 직무) | ①대표이사(사장)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 ...(이하 생략) |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 단, 대표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고,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. ...(이하 생략) | 경영상 목적에 의한 변경 |



[별첨 #2]

○ 사내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

| 성 명 (생년월일) | 주요약력 | 추천인 |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| 최대주주 와의 관계 |
|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이기재 (1969.12.26) |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 前 더우주 부사장 現 아이엠아이 이사 | 이사회 | 해당사항 없음 | 해당사항 없음 |
| YOON KOO KANG (강윤구) (1977.07.12) | UC Berkeley 경제학과 前 SK TELECOM 매니저 前 CITIGROUP Analyst 現 아이엠아이 이사 | 이사회 | 해당사항 없음 | 해당사항 없음 |

[별첨 #3]

○ 사외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

| 성 명 (생년월일) | 주요약력 | 추천인 |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| 최대주주 와의 관계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공민배 (1954.01.08) |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前 대학지적공사 사장 前 경남도립 남해대학 총장 現 삼청각 대표이사 | 이사회 | 해당사항 없음 | 해당사항 없음 |
| 정경수 (1959.01.05) |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前 엑사 E&C 부사장 現 케이비시스텍 사장 | 이사회 | 해당사항 없음 | 해당사항 없음 |



[별첨 #4]

○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

| 성명 | 직위 | 교부할 주식 | |
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주식의종류 | 주식수 |
| 김용훈 | CEO | 기명식보통주 | 600,000 |
| 정민철 | CFO | 기명식보통주 | 150,000 |
| 총(49)명 | | | 총(750,000)주 |

- 행사금액 : 상법 제340조의 2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 당일 결정
- 행사금액 산정방법 : 행사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2개월간, 1개월간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증가를 산술평균한 가격. 단, 호가 미만 단위는 가까운 호가단위로 절상하여 산정, 결정할 예정
- 부여방법 : 신주발행
- 행사기간 :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
-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건변경 :
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, 주식배당,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, 자본감소, 이익소각, 액면분할과 병합,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부여계약서에 의거하여 행사가격 및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

[별첨 #5]

○ 임원 퇴직금규정 변경의 건

| 구분 | 현행 | 개정(안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|
| [별표 1] 임원 퇴직금 산정 시 직위별 가산월수 | 대표이사: 재임 매1년에 대하여 2개월분 이사, 감사: 재임 매1년에 대하여 2개월분 | 대표이사: 재임 매1년에 대하여 3개월분 이사, 감사: 재임 매1년에 대하여 3개월분 | 주주총회 승인 사항 |